〈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 록 번 호 : 20100100085

*최초 등록일 : 2010년 02월 01일

*최종 등록일 : 2024년 11월 29일

http://nongolhouse.com

ng9292@naver.com

[논 골 집]

정 보 공 개 서

정준유통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6. 28.

[정 준 유 통]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 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 사무소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길 16(개포동)

■ 대표전화번호 : 02-3461-9675■ 대표팩스번호 : 02-3461-9676

■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관리팀 02-3461-967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4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8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1	3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1	4
٧.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2	<u>!</u> 1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3	4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3	;7
V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4	Ю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4	12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논 골 집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길 16 (개포동)				
저즈ㅇ투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	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정준유통	1999.5.26	개인사업자	1999.5.26	여금성	02	-3461-9675	02-3461-9676
	법인등록번호	호		사업자등록변	번호	211-7	78-6445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12길 16 (개포동)				
대표	여금성	논골집	대표	포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여급	금성	02-3461-96	575	02-3461-9676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서을	울시 강님	구 논현로 1	2길	16 (개포동)
사용인 (임원)	여형준	논골집	대표	포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22)			여급	금성	02-3461-96	575	02-3461-9676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논골집	서울	물시 강님	구 논현로 1	2길	16 (개포동)
사용인 (혈족)	여인성		대표	포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 1)			여급	금성	02-3461-96	575	02-3461-9676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u></u> 주 소			
			서울	물시 강님	구 논현로 1	2길	16 (개포동)
게여하나	(주)제이제이 정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계열회사 			여급	금성	02-3461-96	574	02-3461-9676
	법인등록번호	<u> 110111-2</u>			302-85-0394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을 인수·합병 하거나 다른 기업(가맹사업 브랜드 포함)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브랜드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논골집]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논 골 집	논골집은 우리나라 고유의 맛을 지향하는 전통 소고기 참나무 숯불구이 전문점입니다.
상 호	논 골 집 〇 〇 점	
상표(서비스표)	성프등록 제 0059146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59146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1년	1,492,965	1,125,263	367,702	1,802,616	99,583	37,777
2022년	1,185,540	818,406	367,134	2,378,091	64,051	5,674
2023년	1,124,437	483,270	641,167	2,172,122	85,677	16,765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2)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100%입니다.]

[당사는 가맹사업(논골집)을 하고 있으며, 당사가 각 가맹사업 영업표지별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의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과 대비하여 100%에 해당하며,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중 논골집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육류매출액은 100%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I≡	혀 지이	사업경력				
원인어구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ქ 사장	2006.7.31~현재	논골집수서점 대표	업무총괄		
가맹사업	여금성		2006.1.1~현재	(주)제이제이정준 대표이사	업무총괄		
관련			2006.1.1~현재	정준유통 대표	회사업무총괄		
임원	여형준	실장	2007.10.8~2023.12.31	논골집서초점 대표			
			2006.1.1~현재	실장	가맹사업 기획 개발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상근 2	비상근 -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 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논골집 (서비스표권)	간판상호 및 광고 사용	1999.02.09출원 2000.01.21등록	출원 제1999 -0001314호 등록 제4100591460000 호	여금성	2030.01.2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논골집] 가맹사업 현황

1. [논골집]을 시작한 날: 1998년 11월 16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1998년 1월 1일)

2. [논골집]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준유통	논골집	여금성	1998.11.16~현재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12길 16

3. [논골집] 업종

영업표지	업종			
노고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는 근실입 	한식	소고기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논골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년			2022년			2023년	
시 기 기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7	16	1	16	15	1	14	13	1
서울	7	6	1	6	5	1	6	5	1
부산									
대구									
인천	2	2		2	2		1	1	
광주									
대전	1	1		1	1		1	1	
울산									
세종									
경기	6	6		6	6		5	5	
강원									
충북									
충남	1	1		1	1		1	1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 최근 3년간 [논골집]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7	0	0	1	1	16
2022	16	0	0	1	0	15
2023	15	0	0	2	0	13

6. [논골집]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논골집]외에도 [0]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모두 [0]개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ſ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丁正	(S조/이금	8 대표시	등록번호	H0	2021.12.31	2022.12.31	2023.12.31	

7. [논골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반포삼겹살]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13	6,005

8.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논골집]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말			2023년 평	균 매출액			
지역	가맹점 수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비고
전체	13	130,765	2,983	555,106	13,888	18,009	450	
서울	5	195,281	4,546	555,106	13,888	44,941	1,616	
부산	-	해당없음						
대구	-	해당없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세종	_	해당없음						
경기	5	110,902	2,368	208,874	2,611	72,452	4,265	
강원		해당없음						
충북	_	해당없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전남	_	해당없음						
경북	_	해당없음						
경남	_	해당없음						
제주	-	해당없음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육류 공급액 x 4]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육류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5%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가맹본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논골집]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0]곳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해당없음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법령 기재사항

당사에서 [2022년]에 [논골집]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총 [0]천원이며,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45]쪽을 참고하십시오.

7 8	√ Γl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шп
구분	수단	기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비고
합계			0	0	0	
	소계	년중	0	0	0	
71.7	TV					
광고	라디오					
	인터넷					
	소계					
판촉						

11.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 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	기관 상호	담당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민은행 포남지점		강남구 개포동 1231번지	02-575-7523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 ② 지정된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 ③ 예치기관이 가맹사업자에게 예치사실 통보
- ④ 예치금 지급 승인(보류) 신청
- ⑤ 예치금 입금 확인 및 계약 체결 2개월 경과 후 가맹본부 지급계좌로 입금 확인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없음]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해당없음"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없음"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회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없음"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회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없음"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논골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점포면적150m²기준 [133,420]천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없음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 계	[5,500]				
계약금	"없음"				
가맹비	"없음"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사작1일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10,000]			
보증금	10,000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본사가 공급한 상품대 미납등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 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5,500		
가맹비	0		
교육비	5,500		
보증금	10,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2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117,920]	2,620			150㎡ 기준
인테리어 (추가공사 및 점주직접공사제외)	협력업체	79,970	1,777	공사마감후 1일 이내	공사전 계약취소	3.3㎡당 160만원(수도권이외 지역공사비10%추가)
주방기기류	협력업체	16,500	366	완료후 1일 이내	계약후 3일이내	주방시설
집기자재	협력업체	6,600	146	완료후 1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홀.주방 주요품목
간판류	협력업체	4,400	98	완료후 1일 이내	공사전 계약취소	1층기준
최초 공급 상품 비용	정준유통 협력업체	2,200	50	공급후 1일 이내	상품 미공급시	
구이기 배기설비	협력업체	5,500	122	완료후 1일 이내	공사전 계약취소	외부.주방덕트 별도
POS시스템	협력업체	2,750	61	완료후 1일 이내	공사전 계약취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인테리어 자체 시공시 공사금액의 3.3㎡ 기준으로 176천

원 을 공사완료후 30일 이후에 당사에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상담→담당자 배정 →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입지파악 및 담당자 입지추천 → 현장 조사 등 상권 분석 → 타당성 검토 및 의견 교환→가맹희망자 확정(미확정시 다른지역 물색 또는 가맹계약 포기)→ 가맹계약 및 점포계약
	※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희망자의 점포입지 확정을 위한 당사 담당자의 타당성 검토 자료는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입지선정 주체는 가맹희망자 이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논골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잔금
		해당없음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4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 분담금		해당없음				
교육훈련비	정준유통	5,500	교육 실시 2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협력업체	2,000 (추정치)	간판변경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영업지역 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보수비용	협력업체	20,000 (추정치)	교체·보수 후 5일 이내			교체·보수 필요시 시설기기등의 내부연수등은 감안하여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	정준유통	연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 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2,750] 천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없음				
추가 교육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추가교육 필요시
점포 이전비	해당없음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 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 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논골집]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정준유통]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고 90%범위내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논골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 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논골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①하는 부동 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명칭 ^②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³	경제적 이익의 내용 ^④	비고
		해당없음		
계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논골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이익의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2) 당사가 [논골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	:	:	해당없음	:	:	
	계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갈비살			
안창살			
등 심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1회 위반: 구두 경고	
삼겹살	제품을 판매할 수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차돌박이			
목심,탕갈비	없음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양지,목살,전지			
항정살,가브리살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갈비살	18,000(150g)	문서 통보	2023년 12월 기준
안창살	20,000(150g)	n	"
차돌박이	11,000(150g)	"	"
삼겹살(수입)	9,000(200g)	n	n,
삼겹살(국내산)	13,000(200g)	n	n,
등심	27,000(150g)	n	n,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①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②		
등일만 집중 함기	가맹본부	계열회사	
돼지고기 또는 소고기 구이를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논골집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①	설정방법 ^②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4,0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 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파 삼포 엽심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 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논골집'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①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②
2023년	83%	17%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①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②
2023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기간 [논골집] 가맹사업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 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 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1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7조1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 ·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7조1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 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1항
○ [논골집]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7조1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조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서를 위반하여 년 3회 이상 동일한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 은 경우	8조1항
○ 가맹계약서 제4조에 의한 가맹점 사업자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	8조1항
○ 가맹계약서 제21조에 의한 상품 공급을 중단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8조1항
○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서 제22조교육을 이수치 않는 경우	8조1항
○ 가맹본부 서면 통지 및 승인 없이 귀하가 '임의로'가맹점을 양도 또는 임대한경우	8조1항
○ 공급받은 상품 등을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제3의 장소에서 판매하 는 경우	8조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 통지 없이 계약서 제8조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 시된 경우	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8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 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8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 외한다.	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8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8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8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거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해당없음	

[당사가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 수정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게 되는 예상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가맹점사 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①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0일)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3461-9674)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의 가맹계약 해지와 잔여 계약기간을 양수인에게 부여하며 양수인이 원할 경우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 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 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자 검 토(5일)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02-3461-9675)
명의변경 (배우자 직계가족 동업자)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 면으로 명의변경 신청 → 당사 담당 자 검토(5일) → 가 맹점운영권 이전 완 료	문의
업무위탁	불가능	-		

7. 겸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겸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논골집]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겸업금지 되는 업종	겸업허가 절차	비고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불판등에 굽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겸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02-3461-967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논골집]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당사와 협의	월4일 이상 휴업할 수 없으며, 연속하여 5일 이상 휴업할 수 없음	문의 (02-3461-967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정준유통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가 있는 경우 첨부합니다.]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논골집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十世	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군급 결사	비끄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20%	광고비 8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본부 계획수립 시행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 판촉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가맹본부 계획수립 시행시	
할인카드. 멤버십 제휴서비스		통일적 팜플렛등의 제작비 100%	서비스로 인한 월 할인금액의 100%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와 사전 협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0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점포면적 150㎡기준	50일 내외	21쪽에서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50	22쪽참조
사업 설명・상담	정보공개서 제공계약서 제공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가맹희망자 상담	D-49~48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3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2	
가맹금 예치	- 예치기관에 가맹금 예치	D-31(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30~28(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8(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8~4(25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3~5(2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 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③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²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³	지급절차 ^④	비용부담 제외사유 ^⑤	비고
○점포의 시설·장비,	ㅇ간판교체 비용	○점포의 확장 또는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일	
인테리어등의	이인테리어 광비용	이전을 수반하지	비용 청구(공사	로부터 3년 이내	
노후화가 객관적	(장바·집기의 교체	않는 점포화경개선	계약서 등 공사	에 가맹본부의	
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 20%	비용을 증빙할	책임없는 사유로	
경우	실내건축공사에	○점포의 확장 또는	수있는서류챔	계약 종료(계약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소요되는 일체의	이전을 수반하는	→ 90일 이내에	의 해자 영업양도	
결함으로 인하여	바용 단, 가맹사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액을	포함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	업의 통일성과	: 40%	가맹점시업자에게	가맹본부 부담	
일성을 유지하	무관하게 가맹점	1070	지급	액 중 잔여기간	
기 어렵거나 정상	사업자가 추가		(단, 가맹본부와	에 비례하는 부	
적인 영업에 현	공사를 실시함 에		가맹점사업자간	담액은 지급하지	
저한 지장을	따소요되는비		별도의 합의가 있는	아니하거나 이미	
주는 경우	용은 제외)		경우 1년의 범위	지급한 경우에는	
, 2 0 ,	, , ,,		내에서 분할지급 가	환수 가능	
			능		
			│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		
			는 가맹본부		
			가 지정한 자		
			를 통하여 점		
			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		
			이 끝난 날부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		
			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ㅇ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았셔排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
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
일이내, 총 부담
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
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 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①	주요 내용 ^②	지원조건 ^③	지원기간	지원금액 ^④	비고 ^⑤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 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고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논골집]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①	신용제공자 ²	금액 ³	신용 형태 ^④	신용제공 조건 ^⑤
		해당없음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논골집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육류 가공조리, 서비스, 매장관리, POS 사용 등	이론 현장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재계약보수 교육	회사 소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 육류 가공조리, 서비스, 매장관리, POS 사용 등	이론 현장실습	갱신계약체결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갱신 계약 시 이수
기타보수교육	신메뉴 교육	별도통보		필요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논골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5,500	최초 계약 시 이수
재계약보수 교육	3일	5,500	계약 갱신 시 이수
기타보수교육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영업에 필요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 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22조제7항에 따라 30일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22제7항에 따라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Ⅳ.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수서점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44 (수서동)

[상기 직영점 수서점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당사의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7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188,563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바로 전 사업 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 한 것입니다.

____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__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02-3461-9674)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ranchise.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